

# 「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17년 1월 26일 이범연의원의 5인이 발의하여 2017년 2월 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-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규칙의 조문 및 형식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부 개정하여 평창군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규칙 제명 띄어쓰기
  - 평창군의회회의규칙 →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
- 제1장 : 등록, 의석배정, 최초집회, 개회식, 선서, 개폐선포,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대하여 규정.
- 제2장 : 의장과 부의장 선거, 임기, 사임에 대하여 규정
- 제3장 : 본회의에 관련된 제1절 회의개폐, 제2절 의사일정, 제3절 의안 및 동의, 제4절 발언, 제5절 표결에 대하여 각각 규정
- 제4장 : 위원회와 관련된 의사일정 및 개회, 동의 및 제안, 의안 등의 상정시기, 심사, 발언, 전문위원의 직무, 의사·의결 정족수, 공청회, 심사 보고서 작성·제출, 위원장의 보고, 회의록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
- 제5장 : 예산안과 결산 등으로 제1절 예산안, 제2절 기금운용계획안, 공유재산관리계획, 제3절 결산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

- 제6장 : 군수 등의 출석·답변
- 제7장 : 의원사직 및 자격심사
- 제8장 : 질서유지 및 방청
- 제9장 : 의원징계에 대하여 각각 규정 하였음.

### 3. 관련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지방자치법

### 4. 검토결과

- 본 규칙안은 제명 씌워쓰기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 준수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규칙의 조문 및 형식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부개정하여 평창군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,  
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